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	-----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개선 권고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 명확화(안 제7조)
- 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
- 나. 관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개선 권고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마. 기 타 :
 - (1) 입법예고(2013.9.27 ~2013.10.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5이상”을 “15 이상”으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을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 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u>평창군수</u>(이하 “<u>군수</u>” 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u>영</u>”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u>15</u> 이상 금액(이하 “<u>장기예치기 금액</u>”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u>당해연도 사용기금액</u>” 이라 한다)는 <u>당해연도</u>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u>당해년도 사용기금액</u>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u>당해년도 사용기금액</u>의 사용</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 ----- ----- ----- ----- ----- <u>1</u> <u>5 이상</u> ----- ----- ----- ----- ----- ----- ----- ----- ----- ----- <u>“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u>)는 <u>해당 연도</u>----- ----- -----.</p> <p>제5조(<u>해당 연도 사용기금액</u>의 운용·관리) ① <u>해당 연도 사용기금액</u>은 <u>제7조</u>----- ----- -----.</p> <p>② <u>해당 연도 사용기금액</u>의 사</p>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하여 다음 연도 당초 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 68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용 잔액-----

-----.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

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

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

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

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

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

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

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

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

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 영 제74조제1호마목-----

-----.

② -----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신설>

----- 3천
만 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기금의 용도 명확화, 연결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연락처	(033) 330 - 2406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